

서울특별시 저소득층 음악영재 발굴 및 교육 기회확대 민간위탁 동의안

의안 번호	1333
----------	------

제출년월일 : 2020년 2월 5일
제출자 : 서울특별시장

1. 제안이유

- 가. 저소득층 음악영재 발굴 및 교육 기회확대 사무는 「문화예술 교육지원법」 제21조에 근거하여 예술적 소질이 있으나, 경제적 여건 상 양질의 교육을 받기 어려운 학생들을 발굴하여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저소득층 청소년의 예술적 잠재력 발현과 자아실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
- 나.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교육지원을 위해 전문지식과 인적·물적 인프라 등을 풍부하게 갖춘 민간에 교육을 위탁·운영 중이며
- 다. 기존의 저소득층 음악영재의 사업의 만족도, 진학률 등 교육의 성과가 좋고, 동북권에 있는 기존 교육기관 이외의 신규 음악영재 교육기관을 선정하여 권역별 균형 도모 및 지역적 편차를 해소하는 목적으로 신규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의3에 의거,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사업개요

- 사업명 : 저소득층 음악영재 발굴 및 교육 기회확대
- 사업내용 : 음악에 소질이 있는 저소득층 학생 발굴 및 교육전문기관의 전문성과 인프라를 활용한 체계적인 교육 지원
- 협약기간 : 협약체결일 ~ 2021.12.31.(2년) 예정
- 교육대상 : 저소득층 초·중·고교생 총 50명
- 수탁기관 선정방법 : 신규위탁

나. 주요 위탁 내용

- 협약기간 : 협약체결일 ~ 2021.12.31.(2년) 예정
- 위탁업무
 - 교육커리큘럼 기획 및 강사진 구성
 - 교육장소 및 협력시설, 교육 기자재 및 물품 확보
 - 교육생 모집 및 선발, 교육 과정 운영, 평가
- 소요예산 : 200백만원 ('20년도 예산)

다. 민간위탁 추진근거

- 지방자치법 제104조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1조
-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-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
 - 제4조(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등) ①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.
 - 3.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
 - 제4조의3(의회동의 및 보고) ① 시장은 제4조 각 호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
- 「문화예술교육지원법」
 - 제21조(사회문화예술교육의 지원)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질 높은 사회문화예술교육을 위하여 문화예술 관련 교육과정 및 교육 내용의 개발·연구 및 각종 문화예술 교육활동과 이를 위한 시설·장비를 지원할 수 있다.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라. 기 타

○ 2020년 서울시 예술영재 교육 추진계획 (문화예술과-18561, '19.12.19.)

※ 작성자 : 문화예술과 예술교육팀 박병수 (☎ 2133 -2566)